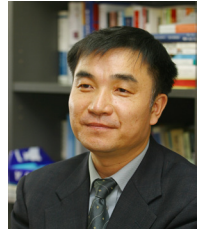


#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비상한 논리

: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보도와  
통비법 위반죄 판결을 중심으로



글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보도와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sup>1)</sup> 통비법을 위반한 언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이전에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13일 한겨레 1면에 ‘최필립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0월 8일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만나 ‘MBC·부산일보 지분을 다 팔아버리자’는 등의 밀실 합의를 했고 그 자금으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을 기획했다는 내용이였다. 1면 기사에는 최 이사장과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렸다. MBC는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세운 노조의 장기간 파업, 그에 따른 구성원 징계 조치로 내용을 심각하게 겪고 있던 때였다. 더욱이 그 무렵 법원은 전 부산MBC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산 반환 소송에서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재산을 국가가 강

압에 의해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시효가 지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한 맥락 위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고단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커버스토리 3면

## 최필립의 비밀회동

10월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이진숙 등과  
“MBC·부산일보 지분 다 팔아버리지라” 밀실합의  
그 돈으로 대선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 기획

19일 발표하기로 한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처분 및 활동계획은 현재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왼쪽)과 문화방송 김재철 이사장(오른쪽) 등 양측 핵심 몇 명만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지분 70%를 소유한 최재우주 방송문화진흥회(정진회)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 계획을 추진했다.

정수장학회(주) (문화방송)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 등 갖는 언론사 지주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정수장학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 사업을 계획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정수장학회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회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막고 해 새누리당 대동맹 후폭풍에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수장학회가 대선 직전 공론화 절차 없이 모두 자산 매각 및 이익 등을 특정 지역 대상 ‘선심성’ 후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진회 안팎의 논란이 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은 이번 대선외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 관련기사 3면

《한겨레》 취재 관계. 최필립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지난 8일 문화방송의 이진숙 기획총괄본부장 이상욱 부장(기후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 주사에 대한 처분 및 활용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은 이 본부장 등이 최 이사장을 찾아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주식 매각·발표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문화방송 쪽은 이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 문화방송 상장 계획, 스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 지분 방식, 스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입장 발표 방안 등을 밝혔다. 이상욱 부장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방식과 관련해 “문화방송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장악회 지분 30%를 상장 물량으로 지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일반인을 대상

으로 주식을 팔면, (문화방송)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장은 “발표회와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예정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이사장은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문화방송 주시는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문화방송 쪽 제안대로 추진하려. 이를 10월 19일 발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멘탈’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9월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10월 발표되면 결승의 날이 다가 오는데, 나도 관철을 할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앞둔 상태였다.

19일 정수장학회의 주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졌다. 이날 행사의 기획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문화방송 이진숙 본부장은 “발표회와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예정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이사장은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문화방송 주시는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문화방송 쪽 제안대로 추진하려. 이를 10월 19일 발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멘탈’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9월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10월 발표되면 결승의 날이 다가 오는데, 나도 관철을 할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앞둔 상태였다.

19일 정수장학회의 주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졌다. 이날 행사의 기획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문화방송 이진숙 본부장은 “발표회와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예정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이사장은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문화방송 주시는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문화방송 쪽 제안대로 추진하려. 이를 10월 19일 발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멘탈’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9월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10월 발표되면 결승의 날이 다가 오는데, 나도 관철을 할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앞둔 상태였다.

2012년 10월 13일 한겨레 1면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수장학회 재산처리 문제로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던 터였다. 한겨레는 이를 후 10월 15일 월요일자에 ‘최필립-MBC 비밀 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회동 그 자체를 보도한 것도 놀라웠거니와 그 회동에서 나는 대화의 내용은 독자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관련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의 일부를 ‘특정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후 여러 갈래의 논쟁을 촉발했다. 대화에서 모색한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 대학생이라는 주장도 그중의 하나였다. MBC는 즉각, 그리고 여러 차례, 자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고 한겨레가 교묘하게 내용을 왜곡하여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리고 한겨레도 MBC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한



MBC 뉴스데스크 2012년 10월 15일자 보도 캡처(출처 : 오마이뉴스, 「MBC,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상대 소송 '기각'」, 2013년 9월 5일자)

겨레의 기사가 허위인지 입증할 수 없고, 또한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양측이 그동안 자신의 매체를 통해 충분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반론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진 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았다. 최 기사가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사실 그리고 그들의 정수장학회 재산 매각 및 선거지원 방법과 관련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최 이사장과 연결돼 있던 핸드폰의 도움을 받아서였다. 당시 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진숙 본부장 등의 방문을 받은 최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최 기자와 대화를 끝냈다. 평소 전화통화를 끝낼 즈음에 뒷사람보다 늦게 종료 버튼을 작동하던 최 기자의 핸드폰은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방문객이 다름 아닌 이진숙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이사장과 대화할 때부터 최 기자의 핸드폰은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 기자의 핸드폰은 '최필립-이진숙 등'의 대화가 진행되던 당일 오후 5시 55분까지 녹음 상태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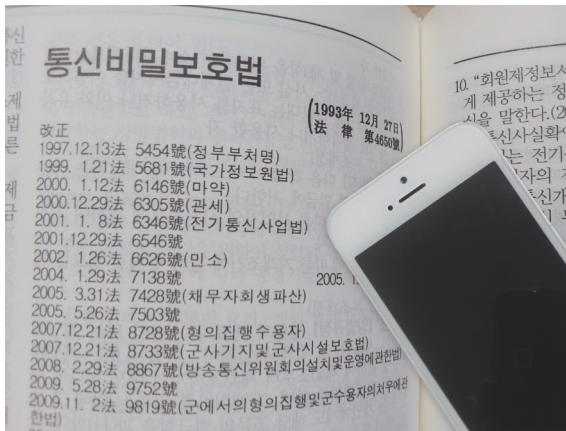
최 기사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이를 녹음하고, 또한 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녹음 행위, 그리고 녹음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화를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에 처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원심을 파기한 항소심 판단은

세 가지 점에서 1심과 달랐고 ‘선고유예’ 판결한 점에서 동일했다. 항소심은 우선,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1심의 판단처럼 부작 위가 아니라 ‘작위’에 해당하고 통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대화를 청취·녹음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애초부터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와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더불어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다른 점은, 형량을 징역 4월에서 징역 6월로 높인 것이다.

###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판결의 법적 쟁점

이 글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작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살아 있는 정치 및 자본 권력의 비밀스러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접 도청장치를 설치해 도청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녹음된 자료를 건네받았거나 이 사건처럼 ‘우연히’ 녹음을 통해 얻게 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언론은 반복적으로 ‘통비법 위반죄’로 실형에 처하고 또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비밀대화의 당사자가 ‘정치·자본’ 권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이거나 소수집단 구

성원이라면 그 내용을 취재·보도한 언론은, ‘선고유예’ 판결 따위는 커녕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언론사를 들춰볼 때 경험적으로 개연성이 높다. 또 다른 작은 결론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몇 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안대로 직접 도청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대화를 공개한 행위가, 명백히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질 경우 엄격 심사를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두어 죄책의 수위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쟁점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청취·녹음’ 행위를 부작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작위로 보고 금지의무 위반죄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돼 온 공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기획한 혐의가 있을 때, 더불어 그 대화의 당

사자가 우리 사회의 엄연한 공적 인물이 분명할 때 그들이 공개할 리 만무한 대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비록 공개되지 않았을지라도 대화 당사자와 대화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직업적·사회적 책무라고 판단될 때,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작위-부작위' 논란은 추후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저널리즘의 가치 차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 글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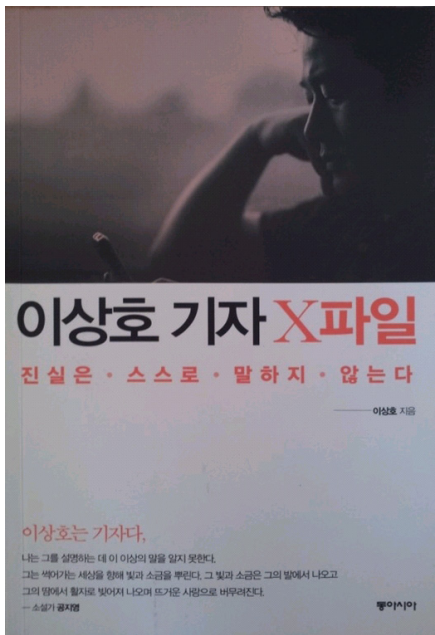
맹세하건대, 그는 무죄입니다. 그의 무죄에 제 인생을 걸고,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사십 년간의 제작업과 그 작업이 허용하는 권위에 기대어 저는 그의 무죄를 단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모든 것, 제가 획득한 명성, 우리나라 문학의 확산에 기여한 제 작품들에 기대어 저는 그의 무죄를 단언합니다. 만일 그가 무죄가 아니라면, 제 작품이 사라져도, 제가 이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저에게 적대적입니다. 제 편으로는 오직 하나의 관념, 즉 진실과 정의의 이상만이 있을 뿐이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법정에서 명예훼손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의 조국은 자신의 명예를 구해준 데 대해 제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sup>2)</sup>

인용 글은, 음지에 간혀 있는 조작된 진실을 빛의 세계로 견인해 낸 프랑스 문호 에밀 졸라의 최후 진술 일부이다. 그는, 일부 군인, 장성, 국방부, 군사 법정 그리고 주류 언론이 죄가 없는 드레퓌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을 신문에 실었다. 그는 당시의 명예훼손법에 의해 고발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그 기고문에서 에밀 졸라는, 행복추구권을 가진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신을 프랑스의 중죄 재판소로 소환해 푸른 하늘 아래서 조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결국 그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에밀 졸라에게 명예훼손죄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벌금 3천 프랑을 선고했다. 더불어 그가 받았던 레지옹 도뇌르 훈장 자격도 박탈했다.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의 '드레퓌스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1894년 10월 말, 드레퓌스 대위가 독일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체포

2) 에밀 졸라 지음, 유기환 옮김 (2005), 『나는 고발한다』 (서울: 책세상, 122-123쪽).

되었다. 비공개된 군사법정은 드레퓌스가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편지의 필적 감정 결과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드레퓌스는 군적을 박탈당하고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아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도'에 수감되었다. 1895년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장 피카르 중령은, 문제가 된 편지는 드레퓌스가 아니라 에스테라지라는 군인이 쓴 것으로 프랑스 당국이 증거를 조작해 드레퓌스를 간첩죄로 처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상관인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사법정의 오판을 바로잡을 것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아프리카의 근무지로 쫓겨났다. 그러나 피카르 중령은 이 사실을 변호사 친구에게 말했고 그 변호사는 다시 상원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드레퓌스 재심 운동에 참여한 핵심 인사 중의 한 사람이 에밀 졸라였다. 드레퓌스의 무죄 확인과 복원은 1906년에 마



「이상호 기자 X파일: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표지

무리되었다. 무려 12년이 걸린 셈이다. 1902년 사망한 에밀 졸라 역시 사후에 명예가 회복되었다. 1908년 프랑스 의회는 에밀 졸라의 유해를 조국을 빛낸 위인들이 묻혀있던 팡테옹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에밀 졸라는 배심원들 앞에서 행한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통상 천둥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실은 모종의 탐구와 모종의 지성을 필요로 요구한다고 말했다.<sup>3)</sup> 에밀 졸라는 드레퓌스가 무죄라고 발언하는 것은 글 쓰는 작가로서, 한 국가의 지성으로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내용을 2006년 당시 MBC 소속이었던 한국의 이상호 기자도 이야기했다. 전 안기부 '미림팀'이 불법으로 도청하여 작성한 이른바 '삼성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사법처리된 이상호 기자는 '진실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다. 그는 '역사 속 진실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진실의 말

값은 늘 비싼가에 진실을 말한 자는 궁형을 당하거나 참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호 기자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정하여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후 4년 4개월여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 인용 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상호 기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3) 에밀 졸라 지음, 유기환 옮김 (2005), 앞의 책, 207-226쪽.

형벌은 교육적 효과를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순간의 망설임 없이 '삼성 X파일'을 보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7년이든 70년이든 얼마든지 고행을 감수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더 많은 기자가 검찰과 사법부를 비롯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sup>4)</sup>

처벌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무지 '반성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상호 기자는, 1심 최후 진술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재판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공소의 정당성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성의 빛'은 같은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한겨레 최성진 기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법정의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처분 등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더라면 그러한 자신을 과연 누가 기자라고 부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더러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에게 허락된 이번 최후 진술 시간에 저는, 재판부에 무죄를 바라거나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기자의, 넓게는 시민의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문보도 이전에 제가 고민한 단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자로서의 양심과 저널리즘의 원칙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건과 같은 상황이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다시 온다 해도 저는 이번과 똑같이 행동하겠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것이 양심을 따르는 길이라면, 앞으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sup>5)</sup>

###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비상한 공적 관심사'

저널리즘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해야 한다. 코바치와 로젠스털이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

4) 이상호 (2011. 3. 17.). 삼성 X파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 『이상호 기자 X파일: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서울 : 동아시야, 325쪽).

5) 최성진 기자 (201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최후 진술

칙들이다. 그들이 말한 바로는, 언론인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인이라면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편집책임자, 사주, 광고주, 그리고 시민과 당국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이견을 말하거나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다른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sup>6)</sup>

통비법 위반죄로 법정에 선 한국의 기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다시 동일한 선택을 하고 다시 법정에 서겠노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이 법의 규정상 한계와 법규 해석의 딜레마를 웅변하고 있다. 양심적 대체 복무를 용인하지 않는 현재의 합헌 해석과 입법상의 체계가 병역의 의무보다 더욱 지난한 것일지라도 대체적인 복무를 감당하겠다는 건강한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고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자칫 현행 통비법 체계와 법원의 해석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실행하는 언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선고유예'범의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국회에 제안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하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관련 판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법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공개된 대화의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확언하기를,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 재산을 처분하여 반값 등록금과 특정 지역 노인정 등에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분 처리까지는 다수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정수장학회 재산처분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예상된다라는 점, 그해 10월 19일에 지분매각 발표가 이루어졌더라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2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효과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애초 계획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법원은 그 내용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의 법리는, 무려 4년 이상 재판을 지연시켰던 대법원이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확정할 때 발굴해 활용하였다. 이상호 기자가 '삼성 X파일' 내용을 보도했을

6) 빌 코바치·톰 로젠스틸 지음, 이재경 옮김 (2009),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327-320쪽).

때, 당시 1심 법원은 이 기자의 언론보도는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무죄 선고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정치행위로서 공명, 정당한 선거는 국가의 통치 질서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후보자와 선거 부정사범,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독점적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준법과 직무 순결성을 감안할 때 대화 자료의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자료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상호 기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비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이 기자의 보도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에는, 보도 시점이 대화 시점으로부터 8년이나 지난 뒤여서 그 사이 대통령 선거가 두 번씩이나 치러졌다는 점, 보도된 대화의 내용은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 질서의 전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그러한 보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출처: YTN,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2011년 3월 17일자)

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러한 판단을 ‘비상한 공적 관심사’의 범리로 포장했다. 대법원은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대화가 보도 시점으로부터

터 8년 전에 이루어져서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즉,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최성진 기자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최 기자의 보도행위 역시 '비상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대로라면 과연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바늘귀를 통과할 '양심의 낙타 펜'이 향후 존재하거나 하겠는가? 필시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법리는 양심의 작동 기제인 언론인으로 하여금 뻔히 뜬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라는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런 지침으로도 쓸모가 있겠다. 저, 중대한 비밀 모의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의 공적 인물 여러분, 기자인 저에게 두 분의 대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제발 제가 들을 수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앞서 짧은 결론을 통해 말한 것처럼, 통비법을 개정해 불법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행위에 대해 엄격 심사를 거쳐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인 양심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그 당연한 전제이기도 하다.